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2470 제출연월일: 2024. 8. 1.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비상대비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비상대비훈련의 종류 및 비상대비훈련의 종류별 실시 권자와 승인권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비상대비훈련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상대비훈련의 정의(안 제2조제3호 신설)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등을 검증 및 보완하는 연습 및 훈련을 비상대비훈련으로 정의하고, 비상대비훈련을 정부연습, 지역별 종합훈련 및 부문별 훈련으로 구분함.

- 나. 비상대비훈련의 실시권자 및 승인권자(안 제14조)
 - 1) 정부연습은 국무총리가 그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 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함.

- 2) 지역별 종합훈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 시하도록 함.
- 3) 부문별 훈련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그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함.

다. 비상대비훈련의 실시 대상(안 제15조)

비상대비훈련의 실시 대상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물자 및 업체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 시·도 및 시·군·구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규정 함.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비상대비훈련"이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등을 검증 및 보완하는 다음 각 목의 연습 및 훈련을 말한다.
 - 가. 정부연습: 2개 중앙행정기관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단 위의 비상대비훈련
 - 나. 지역별 종합훈련: 2개 중앙행정기관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 라 한다) 단위의 비상대비훈련
 - 다. 부문별 훈련: 1개 중앙행정기관의 부문에 관련되는 비상대비 훈련

제12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 · 도 및 시 · 도 교육청

제13조의3제1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비상대비 교육·훈련"을 "비상대비교육 및 비상대비훈

련"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훈련의 실시)"를 "(비상대비훈련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이나부문별로 훈련을"을 "비상대비훈련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을 "비상대비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정부연습은 국무총리가 그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③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역별 종합훈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④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부문별 훈련(이하 "부문별 훈련"이라 한다)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그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훈련의 실 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비상대비훈련의 실시 대상) ① 비상대비훈련의 실시 대상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상대 비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 1.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
- 2. 시·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4.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 물자 및 업체
- ②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의 실시 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 제목 "(훈련의 방법 및 기간 등)"을 "(비상대비훈련의 방법 및 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훈련"을 "비상대비훈련"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도상훈련"을 "도상연습"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훈련"을 "비상대비훈련"으로 하고, 같은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비상대비훈련의 실시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실제훈련: 실제로 인력자원이 참여하고 물적자원을 사용하는 방식 위주로 실시한다.
- 2. 도상연습: 예상되는 비상사태 상황에 따라 서면 조치를 하거나 조치 방안을 토의하는 방식 위주로 실시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훈련의 실

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4조에 따른 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된 경우"를 "제14조에 따라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훈련"을 "비상대비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다"를 "부문별 훈련을 실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훈련실시명령이 발령 된 경우"를 "제2항에 따라 부문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다 대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로, "훈련"을 "비상대비훈련"으로 한다.

제20조 중 "훈련에"를 "비상대비훈련에"로, "훈련 참가"를 "비상대비훈련 참가"로 한다.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본문 중 "훈련"을 각각 "비상대비훈 런"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이 법에 따른 훈련"을 각각 "비상대비훈련"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0 (5) 3) -1 -1 0
1.·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 <신 설></u>	3. "비상대비훈련"이란 비상사
	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9조
	의3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등
	을 검증 및 보완하는 다음 각
	목의 연습 및 훈련을 말한다.
	가. 정부연습: 2개 중앙행정기
	관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
	는 전국 단위의 비상대비
	· 한 건
	나. 지역별 종합훈련: 2개 중
	<u>앙행정기관 이상의 부문에</u>
	관련되는 특별시·광역시
	<u>•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u>
	<u> 자치도(이하 "시·도"라</u>
	한다) 단위의 비상대비훈
	<u>런</u>
	다. 부문별 훈련: 1개 중앙행
	정기관의 부문에 관련되는
	비상대비훈련
 제1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제1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① 다음 각 호의 기관	임명 등) ①

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덤	감당자를	두어야
하다.		

- 1. 2. (생략)
-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 및 시·도 교육청
- ② ~ ⑥ (생 략)

② (생략)

제13조의3(비축물자 사용) ① 제 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는 이 법에 따른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비상대비 교육 · 훈련

제14조(훈련의 실시) ①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u> 따라 전국 또는 지역이나 부문

<u>.</u>
1.・2. (현행과 같음)
3. 시·도 및 시·도 교육청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비축물자 사용) ①
「재난 및
<u>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u>
② (현행과 같음)
레시키 네치네기 이 미
제4장 <u>비상대비교육 및</u>
비상대비훈련
제14조 <u>(비상대비훈련의 실시)</u> ①
비상대비훈련을
_ 1 0 11 12 2 2

별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명령은 국무총리가 그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신 설>

- ③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의 훈련실시명령 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 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은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과 「민방위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민방위 훈련 등과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정부 연습은 국무총리가 그 방법·기 간 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 을 받아 실시한다.

- ③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역 별 종합훈련은 행정안전부장관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④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부문 별 훈련(이하 "부문별 훈련"이 라 한다)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그 방법·기간 등에 대하 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 시한다.
- <u>⑤</u> 비상대비훈련----

<신 설>

제15조(훈련실시대상) 훈련실시대 | 제15조(비상대비훈련의 실시 대 상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인 력 · 물자 및 업체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 여는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상) ① 비상대비훈련의 실시 대 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 여는 비상대비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 1.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행정기 관 소속 지방행정기관
 - 2. 시 · 도 및 시(「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 한다) • 군 •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
 - 4.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 •물자 및 업체
 - ②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훈련 의 실시 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훈련의 방법 및 기간 등) ① 훈련은 실제훈련과 문서에 의한 도상훈련으로 구분하여 실 시한다.

- ② 훈련의 기간은 연(年)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험제품 생산훈련과 도상훈련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훈련은 대통령선거, 임기만 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ㆍ지방 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 선거의 선거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7조(훈련통지서의 전달 등) ① 제17조(훈련통지서의 전달 등) ① 시 · 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

- 제16조(비상대비훈련의 방법 및 기간 등) ① 비상대비훈련의 실 시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실제훈련: 실제로 인력자원이 참여하고 물적자원을 사용하 는 방식 위주로 실시한다.
 - 2. 도상연습: 예상되는 비상사태 상황에 따라 서면 조치를 하 거나 조치 방안을 토의하는 방식 위주로 실시한다.
 - ② 비상대비훈련---------- <u>도상연습</u>-----③ 비상대비훈련-----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훈련의 실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훈련실시명 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대상자·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8조(동시관리훈련) ① 정부는 기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물적자원과이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에 대하여 동시에 <u>훈련</u>을 실시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물적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u>훈련실시</u>명령을 발령한다.

제14조에 따라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동시관리훈련) ①
<u>비상대비훈련</u>
,
1. ~ 5. (현행과 같음)
②
부문별 훈
면을 실시한다.
<u> </u>

- ③ 시・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 관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 은 제2항에 따른 훈련실시명령 이 발령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통지 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출석 등의 의무) ① 인력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 면 훈련통지서에 적힌 바에 따 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 하여 관계 공무원의 직무상 지 시에 따라야 한다. 1. (생략)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유실
 또는 붕괴되거나 가산(家産)
 에 중대한 재해를 입어 본인
 이 아니면 그 사태를 수습하
 기 어려운 경우
 - 3. ~ 7. (생략)
 - ② 물적자원의 훈련통지서를 교 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③
<u>제2항에 따라 부문별 훈련을</u> 실시하는 경우
제19조(출석 등의 의무) ①
 1. (현행과 같음) 2.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u>
법」 제3조제1호
3. ~ 7. (현행과 같음) ②

는 경우가 아니면 운년당시시에	
적힌 바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물자를 지정된 사람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	
산과 권리인 물자의 경우 지정	
된 날까지 훈련통지서에 지정된	
사람에게 문서를 지참하고 열람	
하게 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	법」 제3조제1호
로 훈련대상물자 또는 업체가	
유실·멸실·훼손되거나 업체	
가 휴업 및 폐업하게 되어 <u>훈</u>	<u>н</u>]
<u>런</u> 에 응할 수 없는 경우	<u> 상대비훈런</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0조(직장보장) 사용자는 그가	제20조(직장보장)
고용한 사람이 <u>훈련에</u> 참가하였	<u>비상대비훈련에</u> -
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	
거나 <u>훈련 참가</u> 를 이유로 불리	<u>비상대비훈련 참가</u>
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보상 및 의료지원) <u>훈련</u> 에	제21조(보상 및 의료지원) <u>비상대</u>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u>비훈련</u>
입은 사람과 사망(부상으로 인	
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을 적용하여 보상하거나 의료지원을 한다. 제22조(실비변상) 훈련에 참가한 제22조(실비변상) <u>비상대비훈련</u>-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제23조(보상 및 보상청구권 소멸 제23조(보상 및 보상청구권 소멸 시효) ① 정부는 훈련으로 인하 시효) ① ---- 비상대비훈련--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훈련대상 물자가 유실 •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에게 보상 을 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다른 훈련과의 관계) ① 제27조(다른 훈련과의 관계) ① 인력자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과 군사교육 소집 등은 이 법에 따른 훈련에 ----- 비상대비훈련--우선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훈련은 「민방 ② 비상대비훈련----

위기본법」에 따른 교육 및 훈

련에 우선한다.

③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
의 동원 및 훈련은 <u>이 법에 띠</u>
<u>른 훈련</u> 에 우선한다. 다만, 제18
조에 따른 동시관리훈련은 「여
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우선한다.

3	
	비상대비훈
련	
	•